

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③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자동차의 배차시간간격이 25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 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여야 한다.

④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에 운행을 시작하여야 하고, 막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여야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)”를 “(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)”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 및 운행계통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조례 제8조의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, 2001년 12월 31일까지 조례 제8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과 조례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통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.

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수정안(빈안)

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의결주문중 “외국인투자유치사업”을 “투자유치사업”로 하고, “외국인투자기업”을 “국내·외투자기업”로 한다.

안 별첨 처분(매각)대상재산목록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란중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”를 각각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”로 하고, 동목록 매수희망자 주소·성명란중 “지명경쟁입찰”을 각각 “용도를 지정한 일반경쟁입찰”로 한다.

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

여의도와 구 한남동면허시험장부지인 시유지를 활용하여 투자유치사업을 촉진하고자 국내·외 투자기업에 매각하며, 일반상업용지를 일반공개경쟁으로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

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.

관리계획변경계획 계상재산(목록:별첨)

○ 시유지 매각 3건 : 10필지 36,249.3㎡(10,965평)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요약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천원)

구	분	총 합 계			기정관리계획			금회변경내역			
		건수	면 적	금 액	건수	면 적	금 액	건수	면 적	금 액	
취 득	계	토지	9	60,762.0	52,928,585	9	60,762.0	52,928,585			
		건물	4	15,538.0	3,077,945	4	15,538.0	3,077,945			
		기타									
	1. 매입	토지	6	21,587.0	24,937,585	6	21,587.0	24,937,585			
		건물	2	11,139.0	2,281,000	2	11,139.0	2,281,000			
		기타									
	2. 교환	토지	2	19,724.0	11,095,000	2	19,724.0	11,095,000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3. 매입 또는 교환	토지	1	19,451.0	16,896,000	1	19,451.0	16,896,000			
		건물	2	4,399.0	796,945	2	4,399.0	796,945			
		기타									
처 분	계	토지	38	94,870.1	161,448,222	35	58,620.8	70,121,583	3	36,249.3	91,326,639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4. 매각	토지	35	68,633.8	124,876,034	32	32,384.5	33,549,395	3	36,249.3	91,326,639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5. 양여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6. 교환 처분	토지	3	26,236.3	36,572,188	3	26,236.3	36,572,188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
처분(매각)대상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위치도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처분대상 면 적	추정가액 (개별공시 지가)	처분 시기	처분사유 및 근거법령	매수희망자 주소·성명	처 분 구 분
		지 목	소 재 지	일단의면적						
		합 계		97,308.0	36,249.3	91,326,639				
1	1	소 계		33,058.0	16,529.0	69,646,600				
		대 영등포구	여의도동 23	31,653.0	15,124.0	63,520,800	2000년	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2	용도를 지정한 일반경쟁 입찰	매 각
		대 영등포구	여의도동 23-1	1,405.0	1,405.0	6,125,800	2000년			
2	2	소 계		64,250.0	10,716.0	10,514,707				
		대 용산구	한남동 727-37	1,104.0	1,104.0	1,380,000	2000년	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2	용도를 지정한 일반경쟁 입찰	매 각
		대 용산구	한남동 727-28	53,950.0	5,045.0	6,306,250	2000년			
		대 용산구	한남동 727-30	1,152.0	1,142.0	1,427,500	2000년			
		임 야 용산구	한남동 727-33	2,922.0	1,238.0	481,582	2000년			
		임 야 용산구	한남동 727-34	2,358.0	1,303.0	506,867	2000년			
		임 야 용산구	한남동 727-35	2,436.0	572.0	22,508	2000년			
		대 용산구	한남동 727-38	328.0	312.0	390,000	2000년			
3	3	대 도봉구	창동 1-8	9,004.3	9,004.3	11,165,332	2000년			

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
번호 717

2000년 11월 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10월 23일,
서울특별시장
나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23일
다. 상정일자 : 제12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
회(2000년 11월 7일) 상정, 의결
2. 제안설명 요지
(제안설명 : 교통관리실장 차동득)